

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

의안
번호

1286

제출년월일 : 2011. 7.

제출자 : 홍진옥, 윤범로 의원

1. 제정취지

-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,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,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
- 모든 시민 및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, 법질서 확립 및 범죄로부터 아동, 청소년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 함 (안 제2조)
- 나. 협의회 기능 · 구성,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 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)
- 마.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)

3. 입법예고결과

- 시민 의견 : 접수된 의견 없음
- 충주시 의견
 - 제10조(보조금 지원 등)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후 협의회 회의시 논의 필요함

붙임 :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1부. 끝.

충주시 조례 제 1 호

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 취약계층”이란 아동·청소년(19세 미만으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)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.
2. “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(이하 □□민간단체□□라 한다)”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.
3. “범죄예방 봉사활동”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4. “다문화 가정”이란 충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.
5. “범죄행위”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(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
2.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
3.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
4.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장, 충주시의회의장, 충주경찰서장, 충청북도충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, 충주 소방서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1.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

2. 아동, 청소년분야 전문가

3. 행정·교육·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

4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,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

제5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충주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.

제9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수있다.
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
2. 「국가배상법」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충주시의회 공고 제 2011 - 호

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14일

충 주 시 의 회 의 장

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 취지

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,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,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

모든 시민 및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, 법질서 확립 및 범죄로부터 아동, 청소년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 함 (안 제2조)
- 나. 협의회 기능구성,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 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)
- 마.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처 : 충주시의회의장, 충북 충주시 으뜸로21(금릉동 700), 우편번호 380-700
팩스/850-2909 (연락전화 850-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)
- 기재할 내용
 - ▶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- ▶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▶ 기타참고사항 등